

니다.

本事業의 性格으로 보아서는 一般會計와 區分되는 特정한 地方自治團體 事業으로서 財政收支는 명확하게 把握하고, 財政의 效率性을 높이기 위해서는 同 事業을 特別會計로 設置運營하는 것이 不可避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同 條例案의 主要內容으로는 歲入財源은 地域煖房事業收入, 電力販賣收入, 施設分擔金, 國庫補助金 및 融資金, 地方債 借入金과 一般會計 轉入金 등이며, 歲出項目으로는 熱供給 施設 및 부대시설 建設費, 熱供給施設 運營 및 維持管理費, 預託金 및 借入金, 地方債 資金의 元利金 償還과 會計運營에 필요한 經費 등이 되겠습니다.

위의 內容을 우리 生活環境委員會에서 신중하게 審査한 결과, 다른 特別會計와 마찬가지로 集단에너지공급사업도 철저한 自體收入支出을 통해서 投資效率을 極大化하기 위해서는 特別會計로 運營되어야 한다는 결론은 내리고, 同 條例案을 滿場一致로 可決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審査內容은 配付하여 드린 審査報告書를 參照하여 주시고, 우리 委員會에서 審査報告드린 대로 議決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審査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했어요. 그렇다면 生活環境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서울特別市集團에너지供給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照)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영) 회계는 서울특별시장이 관리·운영한다.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지역난방사업수입(열 및 전기판매수입, 시설분담금 수입금 등)
2. 국고보조금 및 용자금
3. 지방채 차입금
4. 일반회계 전입금
5. 기타 회계운영에 따른 수입금 등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1. 열공급시설 및 부대시설 건설비
2. 열공급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비
3. 예탁금, 차입금 및 지방채 자금의 원리금 상환
4. 회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
5. 기타 지역난방사업에 부수되는 경비 등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조(보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권, 채무의 승계)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중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관련된 모든 재산과 채권, 채무는 이 회계가 승계한다.

2. 서울市政및教育行政에關한質問

(10時 25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서울市政 및 教育行政에 關한 質問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오늘은 모두 여섯 분 議員의 質問이 있으시겠습니다.

회의진행은 議員의 質問을 모두 마친후 一括하여 執行部側의 答辯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執行部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議員님들의 심도 있는 質問과 심도 있는 方案, 조금 전에 朴贊秀 우리 議員님께서도